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144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3년 8월 14일
- 회 부 일 : 2023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평생교육 정책의 주요 대상인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평생교육협의회를 비상설화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시 평생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비 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 평생교육협회 비상설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4항).
- 평생교육협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2.6.8. ~ 6.28.)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평생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의(교육 소외계층)를 신설하고, 평생교육 학습비 규정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내규로 규정하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비상설화 하고, 조문 정비 등(맞춤법, 용어 개선 등)을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음.

※ 본 개정안의 내용

- 정의 변경·신설, 정의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
 - ▶ 정의의 변경 (안 제2조 제3호)
 - ▶ 정의 신설 (안 제2조 제5호)
 - ▶ 정의 신설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4조제1항제6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8조제7호)
 - ▶ 정의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제5호)
- 평생교육 여건 반영 및 학습료 징수 규정 삭제
 - ▶ 평생교육 여건 반영 (안 제7조 제1항)
 - ▶ 평생교육 학습료 징수·면제·환급 규정 (안 제7조 제3항)
- 평생교육협의회
 - ▶ 비상설화 (안 제9조·제10조,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 위원 해촉 (안 제11조)
 - ▶ 서면심의 (안 제13조 제5항)
- 용어의 정비
 - ▶ 접말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5조, 안 제28조)
 - ▶ 띄어쓰기 (안 제3조 조제목, 제4조의3제2항 및 안 제17조)
 - ▶ 문장 형태의 변경 (안 제7조 제2항과 안 제32조)
 - ▶ 사무의 위탁 (안 제29조)

가. 정의 변경·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

1) 정의의 변경(안 제2조 제3호)

- 안 제2조 제3호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정의 규정 내 중복된 용어의 반복(피정의항과 정의항에서 중복된 용어 사용)을 피하고, 기존에 없던 상위개념(유개념, 類概念, Concept of concept)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조문 내용의 변경 없이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피정의항 (정의할 용어)	정의항 (정의하는 말 또는 설명하는 말)		비고
		종차(개별적 특성)	유개념(상위개념·부류)	
바른정의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틀린정의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피정의항과 유개념 동일용어 사용
틀린정의	사람은		동물이다.	구별되는 개별적 특성 생략

유개념 : 상위 개념, 종개념 : 개념하위, 종차 : 하위개념 간 구분·변별되는 차이·특성

정의 = 종차 + 유개념(상위개념)

정의 규칙 : ① 피정의항과 정의항은 대등(사람은 = 생각하는 동물이다), ② 정의항에 피정의항 반복 금지(동물은 동물이다), ③ 부정적 정의 지양(동물은 식물이 아닌 것이다.X), ④ 모호한 표현지양(사람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물이다 X), ⑤ 종차는 특유의 속성을 표현(사람은 폐로 숨을 쉬는 동물이다X)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란 시장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평생교육진흥원 을 말한다.	3. ----- ----- ----- ----- ----- ----- 기관 을 -----.

※ 기관(機關, organ)

- 출자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 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 지방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

2) 정의 신설(안 제2조 제5호)

- 안 제2조 제5호는 ‘교육 소외계층’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인별 내재적(개인별 다른 흥미·호감, 이해력, 암기력, 추론력, 판단력 등), 환경적 요인(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결핍, 교육경험 부족,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등) 등으로 학령기에 적절한 지적 자극 없이 보내거나, 학업 성취의 기회 등이 없었던 시민들을 포괄하여 ‘교육 소외계층’으로 정의한다는 점과 평생교육의 대상을 특정하여 필요한 평생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중략)	
<신 설>	5.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등을 말한다.

- 다만, 본 정의(‘교육 소외계층’)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본 개정안은 ‘교육 소외계층’을 정의하고 있으나, 교육 소외계층은 성장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평생교육법」, 제16조 ‘평생교육 이용권’ 관련 규정)은 ‘평생교육 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용어 통일을 위해 교육 소외계층이 아닌 ‘평생교육 소외계층’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둘째, 교육 소외계층을 정의하는 말(“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은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교육 소외계층을 열거(장애인, 저학력,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등)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교육 소외계층을 특정하거나 구체화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조문은 모든 시민에게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 뜻을 전달해야 하는바, 상위개념(예시 : 평생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명시하여 정의를 명확화하는 한편, 다른 평생교육 대상자들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특징과 차별점을 두어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셋째,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신설은 2017년의 여성가족부의 권고(「지방자치단체 조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2017.11.)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으로, 위 권고는 교육결핍(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체험·경험의 부족, 문화 이해부족, 문화 부적응, 신체장애로 인한 교육기회 상실 등) 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출발과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평생교육국은 권고 후 6년 뒤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어, 적기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정책이나 근거 마련 등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3) 정의 신설에 따른 용어 정비

- 안 제4조 제1항 제6호, 안 제8조 제1항 제4호, 안 제18조 제7호는 정의규정(안 제2조 제5호) 신설에 따라 ‘취약계층’을 ‘교육 소외계층’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과 교육 소외계층이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용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p>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u>취약계층</u>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p> <p>7.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교육 소외계층의</u>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략)</p> <p>4. <u>취약계층</u>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p>	<p>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교육 소외계층의</u>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5. <u>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u></p> <p>6. (생략)</p> <p>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6. (생략)</p> <p>7. <u>취약계층</u>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p> <p>8. ~ 13. (생략)</p>	<p><삭제></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18조(사업)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교육 소외계층</u>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p> <p>8. ~ 13. (현행과 같음)</p>

○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일자리, 복지, 교육 등의 법령에서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학자들은 개념상 소외계층(이미 어려운 상태이거나, 장래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계층)이 취약계층(이미 어려운 상태에 놓인 계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 각 법령은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다양하게 재정의(사회·안전·정보·문화 소외 및 취약계층 등)하고 있으나, 정책대상은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교육 소외계층’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 취약계층 : 공공의 개입이 없으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평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가 제한된 계층(지원 정보접근성, 지역고립, 원거리 등)
- 소외계층 : 현재 위협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공공의 지원·보호가 없을 경우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을 있는 계층
- 관련 법령·시행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이러닝

(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노인·장애인 등 사회 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취약·소외계층으로 정의하는 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경력단절여성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에 따른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자, 범죄피해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이 있음.
- **참고자료** : 최**(2019), 정**(2012), 김**(2016), 함**(2023) 등

※ 취약계층(법률규정, 정책사업 등의 지원 대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과 소외계층(정책적·사회적·문화적 지원 등에서 소외된 계층)의 정의, 정부의 권고, 조례 개정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혜 사각지대(취약계층) 및 정책 사각지대(소외계층) 발굴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용어 변경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의 실효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범위의 재설정 등에 관련한 계획 및 실행방안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4) 정의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안 제8조제1항제5호)

- 안 제8조 제1항 제5호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육 소외계층'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장애인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는 같은 조항(제8조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8조 제5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중략)	
5. <u>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u>	<삭 제>
6. (생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교육 소외계층’의 정의가 본 개정안의 내용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규정의 중복을 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내용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는 ‘신체적 이유로 발생하는 공공 서비스 접근성의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소외계층’의 정의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등을 포괄 정의하여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삭제하려는 내용인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이 의미하는 바가 접근성 제한 및 사각지대 해소 등에 국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본 조항(안 제8조 제5호)의 개정은 「평생교육법」의 목적(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책임을 정하는 것), ‘진흥’의 사전적 의미(활발하거나 힘찬 상태가 되도록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의미(「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기본계획이 아닌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으로, 평생교육원이 아닌 평생교육진흥원 등으로 규정한 이유는 평생동안의 배움을 통한 범국민적 학습권 실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평생교육법」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평생교육 여건 반영 및 학습료 징수 규정 삭제

1) 평생교육 여건 반영 (안 제7조 제1항)

- 안 제7조 제1항은 폐쇄된 학습장의 명칭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2013년부터 권역별 학습장 5개소(시민청, 은평, 뚝섬, 중랑, 금천 등)를 운영했으나, 2018년 시민대학 본부캠퍼스 개관 후 각 학습장을 본부캠퍼스 등으로 통합하여, 폐쇄시설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조례를 현행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u>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u> 과정, 시민교양 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① ---- <u>학점은행제</u> ---- ----- ----- ----- -----.

〈 서울시민대학 학습장 폐소 현황 〉

(단위:천원)

학습장	개소	폐소	소재지	시설규모	압대구분
도심권	시민청	'13.1월	'21.12월	중구 태평홀(367㎡), 위크숍룸(196㎡)	시민소통담당관 무상압대
	서소문	'20.3월	'22.12월	중구 명혜방(210㎡)	성지역사박물관 유상 압대
동남권	뚝섬	'16.3월	'20.12월	성동구 129m(강의실 2개, 사무실 등)	방송통신대학교 무상압대
서북권	은평	'14.3월	'22.12월	은평구 738m(강의실 5개, 도서관 등)	서울시 소방서 무상압대
동북권	중랑	'16.3월	'21.12월	중랑구 595m(강의실 1개, 사무실 일부)	중랑구청 무상압대
서남권	금천	'18.3월	'19.12월	금천구 65m(강의실 1개)	서울시 소유(모두의학교)

2) 평생교육 학습료 징수·면제·환급 규정 (안 제7조 제3항)

- 안 제7조 제3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비의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평생교육 교육장→시민대학)의 내규로 규정하고, 조례의 규정(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은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u>③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 삭제 ></u>	

-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각각의 학습료의 징수·면제·환급 등을 조례나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필요시마다 개정하는 것은 시민 혼란 초래 및 행정력 낭비로 볼 수 있고,
 - 「평생교육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 서류(내규)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습료의 징수·면제·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 규정(제7조 제3항)은 2018년 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칙(제34조)에서 본칙(제7조 제3항)으로 조문을 이동한바 있으며, 개정 취지는 학습비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의 규정이 평생교육 운영의 필수적 요소이며, 학습비는 평생

학습 체계구축, 평생교육의 동기부여, 교육품질향상, 참여의 지속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어, 보칙에서 본칙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음.

다만, 시장은 학습료의 기준에 대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재위임 및 포괄위임 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의회가 이를 의결하였음.

※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문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9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 첫째, 「**평생교육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평생교육 학습비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어, 조례에 환급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나, 내규로 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평생교육 학습비의 면제 또는 감면은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통일성 있게 시행되어야 하나, 본 개정안은 면제·감면 등을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모두 삭제하고, 평생교육의 시행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 학습비의 반환**

· 「**평생교육법**」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인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둘째, 학습비의 징수·면제·환급 등의 조항 삭제 후 진흥원의 내규로 규정 하려는 것이나, 진흥원은 총 4개(본원 포함)의 시설 중 3개 시설(본부캠퍼스, 동남캠퍼스, 모두의학교 등)을 평생교육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평생교육 학습장 3개소 모두 서울특별시의 행정재산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평생교육 학습장 3개 시설을 관리위탁 규정(법 제27조)에 따라 진흥원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의회의 동의 후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용료 감면 동의 의결일(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학습장 관련)

- 2022.9.2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
- 2021.3.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019.12.1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단체(공공기관, 민간의 기관·단체·개인 등 포함)에게 사용허가 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자가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이용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제처는 행정재산을 이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이용료(학습료)를 부과할 경우 조례로 이용료를 규정하도록 해석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통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인용하여 이용료의 근거는 조례에 규정(공유재산 업무편람 122p)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습료(이용료)의 부과·감면·반환 등의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더 나아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 개정안과 같이 학습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 평생교육국 소관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한 것과 같이 평생교육 학습료의 기준을 보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이용료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10-0485, 2011.2.10.)


광역시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사용허가 조건으로 정함이 없다면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

※ 이용료 (공유재산 업무편람 129p 발췌, 행정안전부)

이용료 :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 셋째,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 학습비의 기준·감면·반환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을 2023년 8월 10일 폐지(서울시보 제3897호, 서울특별시규칙 제4584호, 2023.8.10.)하였음.

서울시보 제3897호

 서울특별시

2023. 8. 10.(목)

◆ 서울특별시규칙 제4584호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2013년 市 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민대학은 규모의 확대,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전문 기관 운영 필요성에 따라 2020년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동 규칙은 시민대학 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지·운영하였으나, 시민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 및 사업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규칙을 폐지하고, 시민대학 운영 관련 내용을 평생교육진흥원 규정으로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 폐지된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의 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수강생의 모집)

[별표 1]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제6조제2항)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7조제1항 관련)

[서식 1]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과정 수강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서식 2] 학습비 감면 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서식 3] 학습비 반환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 시행규칙의 제·개정, 폐지 등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나,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조례 개정 전 폐지한 것은 ‘집행기관이 본 개정안의 원안 가결을 예단’했거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없이 자의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보이며,
 - 본 개정안에 학습료 규정을 보완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결과(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등)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학습비 관련 사항은 입법미비 상태에 놓이게 되어, 시민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조례의 개정 전 시행규칙의 폐지는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담당업무 태만(법률검토 소홀 등) 등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의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발생한 입법미비 상태를 해소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본 조례에 학습료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시행규칙에 위임) 보다 구체적(학습료 기준, 감면의 대상, 범위, 규모,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의 준용 등)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평생교육협의회

- 안 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 등은 상설위원회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본 협의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고, 운영방식 변경(상설 → 비상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9조(협회의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4.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p>	<p>제9조(협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난 후 자동해산한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10조(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u>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②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제13조(회의) ① <u>협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u></p> <p>② <u>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u></p>	<p><u><삭 제></u></p> <p>제13조(회의) <u><삭 제></u></p> <p>② <u>회의는 안전이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전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 서울특별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신중한 심의 필요 시 심의회·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위원회 운영경비 편성 후 불용, 중복 위원회 설치, 위원회 활동저조,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중복적인 위원 위촉 및 특정인의 과다참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계획(「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특성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 통·폐합, 분과 및 소위원회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1) 비상설화 (안 제9조·제10조,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안 제9조 제4항은 협의회의 운영방식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운영방식의 변경(상설 → 비상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법」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④ (생략, 구성 등에 관한 사항)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현황 〉

- 설치근거 : 평생교육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최초구성 : 2009. 5. 18.
- 위원회 구성 : 20명 이내
 - 당연직 : 의장(서울시장), 부의장(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
 - 위촉직 :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학계 및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제6기 '22. 3. 29. ~ '24. 3. 28.
- 운 영 : 정기회(연 1회), 임시회(의장 필요시, 재적위원 1/3 요구)

출처 : 평생교육국

〈 최근 5년간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 총 4회 〉

개최일시	안 건 (제 목)	정책반영 내용
'18. 2.20	·'18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심의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종합계획안 관련 자문	·'18년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사업추진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종합계획 수립 참고
'21.2.16~19	·'21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연구용역(안) ·'21년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추진계획 ·'21년 평생교육과 사업예산	·'21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사업추진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 참고 ·'21년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추진계획 수립 참고
'21.11.29~30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안)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23.1.6~11	·서울런 4050 추진 계획	·서울런 4050 추진에 반영

※ 본 협의회의 개최실적 저조는 평생교육국의 부실한 회의운영에 있는 것으로 보임.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과 전년도 평가 등은 본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2022년에는 본 협의회의 개최실적이 없음에도 평생교육국은 2022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성과평가를 보고하는 등 조례의 규정과 다른 사업추진을 하고 있음.

- 안 제9조 제4항의 규정(심의가 끝난 후 자동해산)에 따라 제10조(임기 규정)와 안 제13조 제1항(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은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2항은 회의 개최의 요건(의장의 필요시, 재적위원 1/3의 요구) 중 일부(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를 삭제하며, 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운영방식을 비상설로 변경했을 때,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협의회 개최를 위한 최소 준비기간을 살펴보면, 협의회 위원의 구성은 상위법과 조례에 따라 의회의원, 전문가, 공무원, 장애인 평생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 위촉을 위한 절차(안전발생→협의회 구성계획 수립 →추천의뢰→추천→교육감과 협의→시장의 위촉)를 고려할 경우, 적지 않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회의 개최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안건 및 일정의 통보 기한(안 제13조 제2항, 15일 전 통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법」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협의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4.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협의회 위원의 위촉 기간과 본 협의회의 의장이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으로 하여금 회의소집과 위원 위촉 등을 요청하는 것은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적기에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 본 개정안의 자동해산 규정(안 제9조 제4항)을 회피하기 위해 안건 심의 중 ‘다른 안건을 시차를 두고 상정’하거나, 실무위원회(본 조례 제8조제4항)를 구성하여 안건(특정 또는 다수의 안건)을 장기간 심의할 경우 비상설화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고, ‘안건 심의기간 늘리기’의 반복될 경우 안 제10조(2년 임기 규정 삭제)의 개정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의 자동해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안건 발생시마다 위원의 위촉이 반복될 경우, 안건심의 지연, 심의기준의 잦은 변경, 심의결과의 연속성 결여, 이로 인해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최말단 기관에서는 정책의 혼란 등이 나타나거나,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매몰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조례 규정을 준수 또는 회피하기 위한 상황(행동, 행정행위 등)은 평생교육국의 고비용·저효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등(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및 평생교육 제공 기관 등)의 광범위한 행정력 낭비, 정책혼란으로 인한 부작용(평생교육 시행기관의 혼란 등) 등이 우려되는바, 본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상설화가 또 다른 비효율 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조례(제4조의3)는 2월말(당해연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보고)과 5월말(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에 대한 보고)의 의회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안건(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을 심의하기 위해 최소 연 2회의 위원 위촉 또는 안건심의 기간 늘리기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 본 조례가 규정하는 본 협의회는 심의사항(제8조제1항)을 고려할 때, 본 협의회는 구성 횟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협의회는 비상설화가 효율적인 운영방식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의3(시행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위원 해촉 (안 제11조)

- 안 제11조의 본문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은 본 협의회 운영 방식 변경(비상설화)에 따라 위원의 해촉 요건을 규정에 맞게 재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11조(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u>할 수 있다.</p> <p><u>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u>를 받은 경우</p> <p><u>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u>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1조(해촉) ----- ----- ----- <u>해촉</u> ----- -----.</p> <p><u>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u></p> <p><u>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u>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u></p> <p><u>4.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p> <p><u>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 안 제11조 본문 개정(“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 → “해촉”)은 임기 규정의 삭제(안 제10조, 단기·일회성 운영,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 제1호는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를, 안 제11조 제2호는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장기 치료 및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위촉 대상자 스스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촉 전에 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보여, 심의 중 사임 또는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안 제11조 제3호는 비밀누설, 사익추구 등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해촉은 협의회 운영기간(위촉시부터 안전 통보 기한(안 제13조제2항, 15 일)과 심의 기간)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 안 제9조 제4항(심의 후 자동해산)을 고려하면, 비밀누설, 사익추구 등을 인지한 시점이 자동해산 이후인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여, 해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치에 맞는 개정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 ‘사건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인지’만으로 위원을 해촉할 경우, 정당성·합리성 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의 수사결과, 감사결과 확정 등을 근거로 해촉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경찰의 수사결과 및 감사결과 확정 등에 불복할 경우, 소송의 결과 확정(법원의 판결) 이후 해촉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해촉 규정의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 제4항(비위 등) 및 제5항(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등의 신설 규정도 위의 검토사항(안 제11조 제3호 - 비밀누설 및 사익추구 등)과 같은 ‘자동해산으로 인한 위원이 아닌 자를 해촉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바, 합리적인 조례의 개정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해촉이 아닌 다른 방식(‘가치의 보호’ 또는 ‘조례·규칙·서약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등)으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 아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서면심의 (안 제13조 제5항)

- 안 제13조 제5항은 본 협의회는 비상설화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구분이 불필요하게 되어, 임시회에 한정하던 서면심의를 모든 회의에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임시회에 한정하여 서면</u> 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 -- <u>서면</u> ----- ----- ----- -----.

- 서면심의를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유권해석 및 법령의 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면심의 장·단점

- 장점 : 심의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부여하며, 문서기반의 명확한 소통 가능, 제출된 의견의 보존, 조용한 참여자들에게 평등한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 회의 운영비 경감, 참여자의 다양성 확보 등
 - 단점 : 의사소통의 부족 유발, 협의회 구성취지 저해(의견의 교환·협의·합의 등 절차 생략가능), 합리적인 의사결정 저해(목적지향적 소통 부족), 의견충돌 시 해소기제 부재, 위원 간 제출의견의 곡해 가능, 취합과정(요약, 분류 등)의 의사왜곡, 의견 취합자 의도 반영(특정 의견의 강조/축소)
- 법제처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출석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사항(소집권자, 정족수, 분과위원회의 설치가부·종류·의결 효과(소위원회 의결을 본 위원회 의결로 간주할 수 있는 사항), 간사, 위원회 수당, 기록 작성·보존 등)은 반드시 조례나 규정 등으로 명문화하도록 안내(「자치법규 길라잡이」)하고 있고, 특히 서면회의나 서면의결 등은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조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운영 관련 법률은 출석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경미한 안전, 긴급회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출석회의 이외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시장이 관리(제·개정 및 폐지)하는 서울특별시 시행규칙에서도 ‘원칙(출석회의) 이외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바, 모든 회의를 타당한 이유 없이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 개정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
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
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라. 용어의 정비

1) 겹말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5조, 안 제28조)

-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5조, 안 제28조는 ‘범위 안’을 ‘범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뜻이 중복된 단어(겹말: 역전앞 등)의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 겹말(같은 뜻을 지닌 말이 겹쳐서 된 말)을 올바른 표현(겹말을 삭제한 용어, 역전앞 →역전, 강제납치→납치, 기습공격→기습, 농사일→농사, 현안문제→현안 등)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사업,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u>범위 안</u>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 ----- ----- ----- ----- ----- ----- <u>범위</u>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자치구,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u>범위 안</u>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 ----- <u>범위</u> -----.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제15조(수당 등) -----

현행	개정안
<p>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 안</u>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u>범위</u>----- ----- ----- ----- -----.</p>
<p>제2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u>범위 안</u>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8조(수익사업) ----- -- <u>범위</u>----- ----- ----- ----- -----.</p>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법제처)과 「공공언어 바로 쓰기」(국립국어원)은 ‘범위 안’을 잘못된 사용 또는 고쳐 써야 할 용어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 국립국어원은 범위를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를 뜻하며, 범위는 ‘안’ 또는 ‘밖’이라는 뜻을 내포하지 않고 있어, ‘범위 안’ 중복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설(국립국어원-상담사례모음 중 2019.12.6.)하고,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표현은 그 뜻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만 해설하고 있음.

※ 국립국어원은 각종 어문안내서(공공언어 등)를 통해 ‘범위 내’, ‘범위 안’, ‘범위를 설정하여’ 등으로 바른 한글사용 및 공공언어의 예시를 설명하고 있음.

※ ‘범위 안’과 관련한 국립국어원 해설(2019.12.6.)

- 질문 :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의미 중복 표현이러는데 ‘예산의 범위에서’로 써야 하나요?
- 답변 : ‘범위’는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를 뜻하는데, 범위에는 ‘안’의 뜻이 없으므로 ‘범위 안’을 의미가 중복된 표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만으로 그 뜻을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15조는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 안 제28조의 개정은 ‘범위 안’을 ‘범위’로 표현할 수 있는 제한적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바, 맞춤법에 부합한 개정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즉, ‘범위’와 관련한 개정은 올바른 맞춤법(원칙 : 범위 안)을 일부 허용하는 표현(범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확한 어문규정에 따라 현행과 같이 조문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지, 본 개정안을 통해 얼마나 확연한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법령에서 ‘범위에서’라고 표현하여 조례와 상위법령 간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은 ‘범위에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을 7차례 사용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맞는 표현과 국어 맞춤법에 따른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대한민국 헌법 중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108조, 제113조, 제114조, 제116조(2회), 제117조

2) 띄어쓰기(안 제3조 조제목, 제4조의3제2항 및 안 제17조)

- 안 제3조 조제목, 제4조의3제2항 및 안 제17조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표현하려는 것이며,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른 것으로 보여 특별한 논쟁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생교육 진흥책무) ①·② (생 략)	제3조(평생교육진흥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시행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생 략) ② 시장은 <u>해당연도</u>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u>다음연도</u>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시행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해당 연도</u> ----- ----- <u>다음 연도</u> ----- -----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u>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① ----- ----- <u>서울특</u> <u>별시 평생교육진흥원</u> ----- -----

※ 「한국어 어문 규범」(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 2017. 3. 28. 시행)

-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원칙) 국립국어원 기획 연수부 기획 운영과
(허용)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기획운영과
(불가) 국립국어원기획 연수부기획 운영과 등
-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3) 문장 형태의 변경(안 제7조 제2항과 안 제32조)

- 안 제7조 제2항과 안 제32조는 피동형(인정될 때,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 문장을 능동형(인정할 때, 스스로 행동하는 것) 문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인정’은 행위주체의 판단에 따른 결정인 점 등(국어는 능동형 문장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될 때’보다 ‘인정할 때’가 행위주체의 권한 등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p>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p> <p>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u>인정될</u>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p>	<p>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p> <p>② ----- ----- ----- ----- ----- ----- ----- <u>인정할</u> ----- -----.</p>
<p>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생략)</p> <p>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u>인정될</u>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p>	<p>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인정할</u> ----- ----- -----.</p>

※ ‘인정’의 뜻

- 표준국어대사전 :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 법률 용어사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 등을) 결정하는 일

4) 사무의 위탁(안 제29조)

- 안 제29조는 ‘위탁하는 때’를 ‘위탁하고자 할 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고자 하다(또는 ‘하려고 하다’)는 앞 말의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의도하거나 바람을 나타내려는 말로, 현행 조문(위탁하는 때)은 위·수탁협약 시점 또는 그 직전을 나타내고, 개정안의 내용(위탁하고자 할 때)은 사무위탁의 착수 시점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사무위탁 착수 시점부터 진흥원에게 위탁을 염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u>위탁하는</u>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 ----- <u>위탁하고자 할</u> ----- ----- ----- ----- -----.

- 「지방자치법」 등 법률의 규정(지방공공기관의 지위)과 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라는 점(「지방출자출연기관법」),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특별시는 소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개정(“위탁하는 때” → “위탁하고자 할 때”)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사업을 우선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 적용 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의 ‘공공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정의(자치행정 + 권한(행정권) + 국가로부터 목적부여)되는바, 출연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은 본 조항에 따른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적용 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규정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평생교육진흥원이 ‘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우선적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지정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제4조제1항)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규정(제4조제2항)하고 있음. 이는 지방분권을 염두하여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임.
- 법제처는 다수의 유권해석(18-0129, 10-0037, 09-0362, 10-0019)을 통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출자·출연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주요 사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는바, 우선적 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법제처의 해석 : 「지방자치법」 제35조(현행 제43조)는 그 제목이 “겸직 등 금지”로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일정한 직위를 겸직하거나 공공단체와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러한 직위를 겸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현행 제43조)의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18-0129)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정의를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미는 있다고 보이나,
 - 신설하는 교육 소외계층의 정의가 명확성이 있는지 여부, 평생교육 학습료의 규정과 시행규칙의 폐지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든 회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원칙과 상위 법령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비상설로 변경하는 것이 또 다른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협의회 위원 해촉 규정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맞춤법에 맞는 않는 표현으로의 개정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
---------	-------	-----------	-------